

# 2023년도 제2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18.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2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58건(안건번호 제2023-168539호~17079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68539호~168540호(순번 1번~2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전송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8541호~168550호(순번 3번~1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68551호~168554호(순번 13번~16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68555호~168565호(순번 17번~27번)는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68566호~170796호(순번 28번~2258번)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1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2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37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0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EV BOX”, ‘U BOX’라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린 사안 총 16건임.

본 건 기기를 구매하여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들은 저작물 권리자들의 전송권 및 복제권, 방송 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 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 기기의 판매자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본 건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본 건 기기의 이용을 용이하게 도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건 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한 글을 ◆◆에 게시하는 것은 영상 저작물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본 건 기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대상 게시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게시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 내지 1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5건임. PDF 파일은 문자, 이메일 또는 채팅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글의 내용이나 채팅수, 후기, 댓글 등으로 개별 연락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임이 확인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번 내지 12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 내지 12번에 대해 가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 내지 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5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 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3번 내지 16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 내지 16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 내지 27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중인 방송 및 영화 등 영상 불법복제물 총 21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7번 내지 27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국내 방송을 포함하여 모두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순번 17번 내지 27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번 내지 225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01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SNL 코리아'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8번은 영화 'SNL 코리아'로, 2023. 9. 2.에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제공된 영상물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드라마 '신병2'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9번은 드라마 '신병2'임. 2023. 9. 11. 방영된 드라마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한강'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59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한강'임. 2023.9.13.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서비스된 최신 회차를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28번부터 2258번까지 총 4,011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8번 내지 225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68539호~170796호(순번 1번~2258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25.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